

【사건번호 2022-01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

1. 개요

- 피신청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대상 공공데이터: 발간물 전자파일
- 신청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2.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발간물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영리적 이용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회계편람(2021년판)」(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

3. 사실조사

- 신청 데이터는 「국가회계편람(2021년)」의 전자파일(PDF)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12월 공동발간하였으며, 국가회계법·시행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회계예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자파일 표지에는 공공누리 3유형*이 부착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사이트 (www.moef.go.kr)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사이트 (<https://gafsc.kipf.re.kr/gafac/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음 * 출처표시, 변경금지 조건으로 자유 이용 가능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27쪽)를 의미함
- 피신청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신청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공공데이터로 볼 수 있음





* pdf 등 전자화된 파일로 관리·제공하고 있음

다.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함(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이 사건 데이터는 회계관련 법령 및 관련 상세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신청인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개되고 있는 자료이므로 비공개성은 문제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답변에 따르면 제3자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상 제공대상으로 볼 수 있음

라. 공공데이터 이용조건

-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제19조제3항),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다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제3조제5항)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10.26.시행)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함(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제2항)
- 공공누리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기준(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미용지침 제3조제4호)으로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이용의 가능 여부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됨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p>[제1유형: 출처 표시]</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p>
<p>[제2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p>[제3유형: 제1유형+변경금지]</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p>
<p>[제4유형: 제1유형+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p> 	<p>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p>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허락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 공공누리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에 따르면, 이용자는 공고문 중 1) 출처표시의무, 2) 저작인격권의 존중, 3) 공공기관의 면책, 4) 이용허락 조건 위반의 효과 항목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공공누리 유형에 따른 이용허락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출처표시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i)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 공표된 연도 등을 표시하여야 함
 - ii)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링크를 제공하여야 함
 - iii)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됨
 - iv)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000’에서 ‘00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
 기관명 000,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
 다.”

- 우리 위원회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2020-004)에서, 신
 청인에게 데이터 이용 시 성명표시, 동일성 훼손금지 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가 피신청기관 홈페이지(URL 포함)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그와 같은 표시는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뿐 아니라 판매 웹페이지에도 이러한
 취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정한 사례가
 있음(조정성립)
- 또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간물 데이터 사건(2015-001)에서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사건 데이터의 제공중단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책의
 표지에 출처 및 발간년월을 표시하고, 온라인 판매 페이지 내 책 소개 부분에도
 출처 및 발간년월을 표시’하도록 조정하였음(조정성립)
- ※ 단, 해당 사건 이외에는 우리 위원회가 ‘표지에 출처를 표시’하도록 권고한 사례가 없음

4. 조정내용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에 기재된 저자의 성명, 발행기관, 발행시기 등의
 정보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데이터의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피신청인 웹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무료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신청인의 출판물 표지(앞표지 또는 뒷표지)에
 표시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의 경우 출판물의 표지뿐 아니라 판매 웹페
 이지에도 이를 표시해야 한다.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각호).
 - 또한 제공대상 데이터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공공데이터법 제3조제4항).

- 이 사건 관련 법령, 당사자 제출자료 및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데이터는 국가회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기준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비공개성이나 제3자 권리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출판 등 영리적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근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반려한 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또한, 신청인의 데이터 이용권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 피신청인이 제정·시행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공공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이용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저작물의 신뢰성 확보 및 저작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건을 정하고 있는 만큼, 신청인의 데이터 이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은 데이터 이용 시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은 해당 가이드라인 중 '출판 전 신청인의 출판물을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검수받도록 하는 조건(이하 '사전검수조건'이라 한다)'과 '출처를 앞표지 상단에 표시하도록 하는 조건(이하 '출처표시조건'이라 한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중 사전검수조건의 경우 공공데이터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 출처표시조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서 공공저작물 이용자에게 출처를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제8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범위를 표시하도록 하며 이 중 어느 유형에 따르던 출처표시는 공통된 이용조건이라는 점,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 및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6-23호)」에 따라 출처표시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조건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반드시 앞표지 상단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소비자가 출판물을 구매할 때에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1호 등의 규정과 취지, 선행 조정사례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출판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에는 출판물의 표지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판매 페이지에도 출처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여부를 결정할 때에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하고, 신청인은 상기 조정결정사항과 같은 조건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5. 조정결과

- 조정성립